

2024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

- 수입바이어 지원사업 -

- 지원대상 : 한국 농식품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
- 지원품목 : 한국 농식품(농·임·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)
-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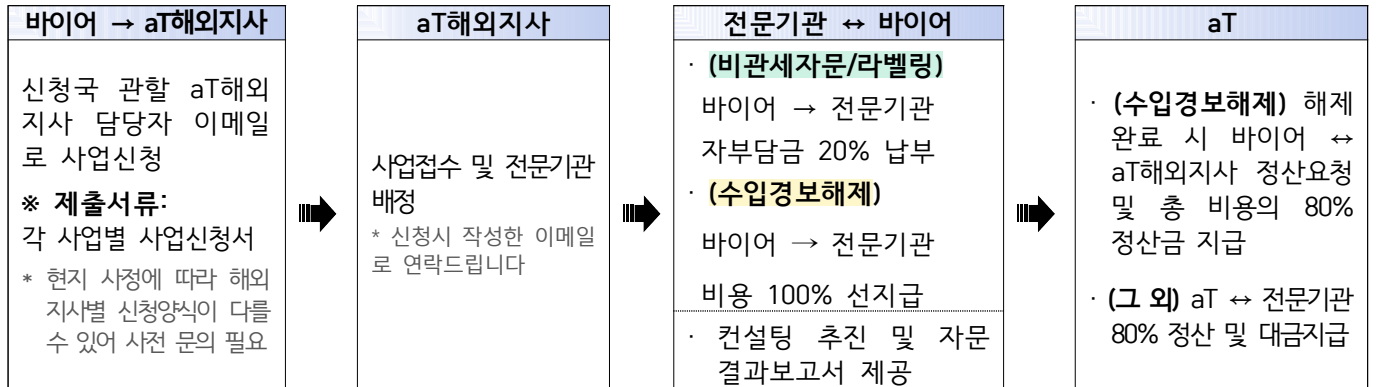
구분	세부내용	지원비율	지원한도									
일반자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관, 법률, 관세, 위생·검역, 할랄관련, 현지어 표기법, 중국 해관 세번 예비판정 등 자문 * 국가별 자문가능 내용이 상이하므로 필요시 관할 aT해외지사 문의 	80%	연간 업체당 20백만원									
특수자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국 수입경보(Import Alert Red List) 해제 컨설팅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컨설팅 내용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단계</td> <td>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단계</td> <td>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단계</td> <td>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 제출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제기간 통상 6~12개월 소요되며, 해제 완료시점부터 2개월 이내 정산요청 필요 ○ 미국 수입식품 안전검증(FSVP) 교육 및 컨설팅 - FSVP교육비 지원, 유제품 등 정밀분석을 요하는 품목 정밀분석, 수입업자 개별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 * 검사준비,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등록 외 비용은 지원 제외 			컨설팅 내용	1단계	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		2단계	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		3단계	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 제출
컨설팅 내용	1단계			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								
	2단계			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								
	3단계	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 제출										
라벨링 현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1단계) 제품 통관사전검토(원료검토), 라벨 사전검토 등 ○ (2단계)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견본 제작 및 라벨링 제작에 필요한 영양성분 검사 등 지원(국가별 지원 상이할 수 있으며 샘플 발송비는 지원불가) * 1단계 사전검토결과 수입통관 불가인 경우 2단계 지원불가 * 동판제작, 라벨 스티커 인쇄 및 부착비용, 식품검사 샘플발송비 지원제외 											
포장패키지 현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 농식품 현지 포장재·용기 디자인 개선 * K-Food 로고 부착 필수 * 디자인 시안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, 동판·금형제작 및 포장지인쇄 지원제외 * K-Food 로고 부착, 현지어로 표기한 것에 한해 지원(디자인 개선후에도 전면 한글 제품 지원불가) * 디자인 개선 이후 해당제품 `24년 수입실적 확인 시에만 정산가능(수입면장 등 제출 필요) * 2024년 해당 제품 수입증빙 제출 필수 											
수입등록·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수입등록)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(갱신)·검사비 지원 - 인도네시아 식약처(BPOM), 할랄인증(BPJPH) 사전등록, 베트남 식약처(VFA), 태국 식약처(FDA),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의청(DVS) 등록, 인도네시아 할랄인증(BPJPH) 등 ○ (식품검사)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·검역비 * 각국 수입등록·검사 관련 결과 증빙, 2024년 해당 제품 수입증빙 제출 필수 											

※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**일체의 번역비 지원 제외**

※ 단, **전문기관 자문(일반,특수)**에 한하여, 국문 번역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[자문 문의내용]칸에 "국문 제공 희망" 요청 시, 국문으로 **자문 결과보고**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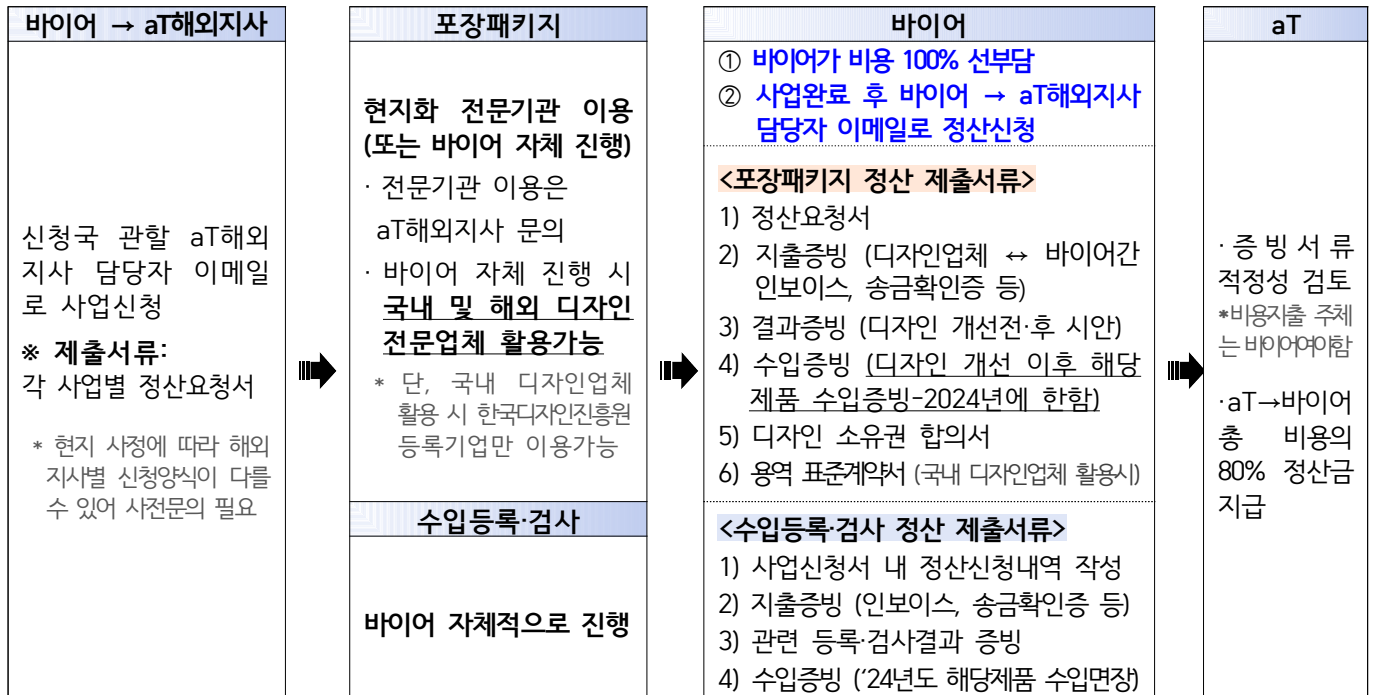
○ **진행절차 안내** * 신청국가별·해외지사별 진행방법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aT해외지사 문의

▶ **비관세장벽 자문, 라벨링 현지화**



※ (예외) 홍콩/대만의 경우, 바이어가 100% 선지출 후 결과보고 및 정산신청 시 자부담 20%와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80%를 환급하며, 환급시기는 3, 6, 9, 12월임 / '25년부터 예외없음

▶ **포장패키지, 수입등록·검사**



○ **aT해외지사 연락처 : <현지화지원 국가별 주요 안내사항 및 전문기관 현황> 참고**

* 서비스 국가는 현지사정에 따라 확대·축소될 수 있으며, 자문 가능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

○ **유의사항**

- ▶ **일반·특수자문, 라벨링**의 경우 현지화사업 신청 후 현지화 전문기관에서 추진건만 지원 가능
- ▶ **포장패키지 현지화**에서 **국내 디자인업체 활용** 시 디자인진흥원 등록기업만 이용 가능
 -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기업 조회방법 : http://designfirm.kidp.or.kr/com_search/search.asp
 - 신청업체와 특수관계(대표자 동일 등)에 있는 디자인업체 활용 불가
- ▶ **수입등록·검사**는 현지화 전문기관을 따로 배정하지 않고 바이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
 - 단, 일부 수입등록(말련 유품품 등록 등)의 경우 현지화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가능하나 세부 내용은 aT해외지사 문의
- ▶ 여러 건 사업신청 가능하나, 연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 자부담 필요

▶ 사업진행 관련 문의사항 및 취소요청은 각 해외지사 담당자에게 문의

국가	관할 aT해외지사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중국	칭다오aT물류유한공사	교휘	070-7938-0864	qh881129@at.or.kr
홍콩	홍콩	김성철	+825-3704-6903	charles.kim@at.or.kr
대만				
일본	도쿄	김형표	070-8287-3060	kfood@atcenter.or.jp
		진은아		
미국	뉴욕	고운지	(+1)-212-889-2561	bk16@at.or.kr
	LA	박지혜	(+1)-562-809-8810	jessiep@at.or.kr
캐나다	뉴욕	고운지	(+1)-212-889-2561	bk16@at.or.kr
멕시코	LA	박지혜	(+1)-562-809-8810	jessiep@at.or.kr
브라질	상파울루	정유선	(+55)-11-91045-4577	usuni@at.or.kr
유럽	파리	박주연	070-4617-2424	juyaun.park@at.or.kr
베트남	하노이	박태영	070-4617-7101	pty5417@at.or.kr
라오스				
필리핀				
캄보디아	호치민	김성우	+84 28 3822 7504	atcenterhcmc@at.or.kr
인도네시아	자카르타	한태민	070-4617-2694	htaemin0930@at.or.kr
호주				
뉴질랜드				
말레이시아	쿠알라룸푸르	정담원	070-4617-7238	damwon@at.or.kr
싱가포르				
태국	방콕	허보민	070-4617-7227	bmhur@at.or.kr
인도				
미얀마				
GCC	두바이 (UAE, 사우디, 쿠웨이트, 바레인, 카타르, 오만)	권혜진	(+971)-4-339-2213	piekwon@at.or.kr
이란	두바이	권혜진	(+971)-4-339-2213	piekwon@at.or.kr
튀르키예				
아프리카				
러시아	모스크바	김병수	070-4617-3278	bs14.kim@at.or.kr
카자흐스탄				
키르기스스탄				
우즈베키스탄				
몽골	대련	김성진	070-4617-3278	ksj891230@at.or.kr